

교회실용음악학부 교육과정 운영 내규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대신대학교 교회실용음악학부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이에 맞는 인재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학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이를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육목표, 인재상, 전공능력)

- ① 교회실용음악학부의 교육목표, 인재상, 전공능력은 다음과 같다.
 1. 교육목표: 기독교 가치관을 정립한 창조적 음악전문인 양성
 2. 인재상: 창조적·전문적·신앙적 음악인
 3. 전공능력: 신실한 기독교신앙, 창의적 예술 역량, 봉사/도전 역량, 전문적 연주 역량, 학문적 전문 역량, 글로벌 문화 역량, 현장 적응 능력
- ② 교육과정은 전공능력을 균형있게 제고하여 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.
- ③ 교육과정은 학년별/수준별 역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이에 대한 개선은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학부교수 회의,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
제3조 (내규의 적용 범위) 이 내규는 대신대학교 제 규정의 범위에서 적용되며,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실용음악학부학부 교수회의에서 의결한다.

제4조 (교회실용음악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)

- ① 교회실용음악학부의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. 위원회는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수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할 수 있다.
- ②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1. 교육목적, 교육목표, 전공능력, 취업 및 질로탐색 등에 관한 연구
 2.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편에 관한 연구
 3.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성과 환류 방안에 관한 연구
- ③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범위 및 임기는 학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

제5조 (교육과정)

- ① 교육과정은 전공능력을 균형있게 제고하여 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.
- ② 교육과정은 학년별/수준별 역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과정 개편은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교회실용음악학부교수 회의,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
제6조 (취업 및 진로탐색) 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고 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 및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

- ②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수는 학생들의 선화 진로 분야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
- ③ 교회실용음악학부의 전공능력을 반영한 대표 진로와 핵심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1. 대표진로: 교회음악지도자(지휘, 오르가니스트, 피아니스트, 솔리스트), 음악목사, 찬양사역사, 작·편곡자, 교회음악전문인, 공연연주자, 음악프로듀서, 음악비지니스, 보컬트레이너, 실용음악작곡/편곡
 2. 핵심직무: 공연, 연주활동, 오페라/예술 가곡 등 전문 솔로 연주, 성악/기악/합창단 전문 반주자, 합창단원, 콘서트 세션, 음반 프로듀서, 뮤직 디렉터, 기획사, 방송사, 뮤직프로덕션, 음반사, 교육 및 교수활동, 학원, 학교 강사 활동, 음반 발매, 제작 등 예술 창작 활동
- ③ 교육과정은 설정된 대표 진로와 핵심 직무 습득이 수월하도록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.

제7조 (졸업논문 및 대체)

- 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면서 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 이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1. 졸업연주 2. 학과교육목표에 부합한 과제 및 자격(학과회의에서 정함)
-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졸업자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- ③ 졸업논문(졸업연주) 면제요건:
 - 1) 학과 및 학교교육에 부합한 곳에 해당되는 취업이 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단, 4대보험에 가입된 곳이며 기존 직장인 만학도는 해당되지 않음
 - 2) 학과회의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연주회 멤버로 참석할 경우

제8조 (평가 및 환류) 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고 학부 전공교육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환류한다.

② 학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전공 교육과정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다.

1. 전공 교육과정 성과평가
2. 졸업생 진로 평가
3. 그 외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3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의 개정과 폐지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